

농업기계화촉진법령

2009. 10.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109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농업기계화촉진법령

2009. 10

농림수산식품부
농 산 경 영 과

농업기계화 촉진 법령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농기계)

2009. 10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목 차

농업기계화촉진법령	3
1. 농업기계화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5
2.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별표	45
3.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표	49
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55
Ⅱ.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	63
Ⅲ.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71
Ⅳ.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83
Ⅴ. 소비자피해보상규정(농기계)	93

농업기계화촉진법령

1.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연혁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制定 1978.12. 5 法律 第3120號 他法改正 1990. 4. 7 法律 第4228號 他法改正 1993. 6.11 法律 第4561號 全部改正 1994.11.11 法律 第4788號 他法改正 1995. 1. 5 法律 第4861號 他法改正 1996. 8. 8 法律 第5153號 他法改正 1997.12.13 法律 第5,453號 및 5454號 他法改正 1999. 2. 5 法律 第5759號 改正 1999. 3.31 法律 第5951號 타법개정 2005.12.29 法律 第7775號 타법개정 2008.2 29 法律 第8852號 타법개정 2008.12.29 法律 第9276號 개정 2009. 4. 1 法律 第9621號 타법개정 2009.5 27 法律 第9717號</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1979.11.17 대통령령 제 9662호 타법개정 1984. 2.29 대통령령 제11372호 타법개정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타법개정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5호 전부개정 1995. 5.12 대통령령 제14645호 타법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16445호 타법개정 2000. 3.24 대통령령 제16445호 타법개정 2000.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 2004.11.18 대통령령 제18591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9. 3 대통령령 제21712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1980. 2. 7 농수산부령 제784호 개정 1980. 6.26 농수산부령 제792호 개정 1984.11.28 농수산부령 제792호 개정 1985. 2.18 농수산부령 제 926호 전부개정 1989. 2.15 농림수산부령 제1014호 타법개정 1990.12.31 농림수산부령 제1060호 전문개정 1995. 5.12 농림수산부령 제1187호 개정 1996.12.28 농림부령 제1246호 개정 1999. 1. 5 농림부령 제1304호 개정 1999. 5. 24 농림부령 제1332호 개정 1999. 8. 9 농림부령 제1336호 타법개정 2004. 1.29 농림부령 제1454호 개정 2004.11.18 농림부령 제1482호 타법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타법개정 2008.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타법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개정 2009.9.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2호</p>

目 次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 1 조 목 적 8	제 1 조 목 적 8	제 1 조 목 적 8
제 2 조 정 의 8	제 2 조 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 .. 8	제 2 조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12
제 3 조 농업기계화촉진의무 10	제 3 조 자금지원 등 10	제 3 조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17
제 4 조 자금지원 10	제 4 조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고시 .. 12	제 4 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 19
제 5 조 농업기계화기본계획 11	제 5 조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원 등 .. 13	제 5 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 20
제 6 조 시행계획 12	제 6 조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15	제 6 조 검정결과의 처리 등 20
제 7 조 신기술농업기계 12	제 7 조 (삭제) 30	제 7 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 23
제 8 조 공동이용 16	제 8 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37	제 8 조 검정의 생략 23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16	제9조 권한의 위임 38	제9조 (삭제) 24
제 9 조 농업기계의 검정 17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10조 (삭제) 24
제10조 檢査合格의 무효·취소 등 ... 18	부칙 40	제11조 검정성적서 24
제11조 사후관리 등 26		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 25
제12조 안전관리 30		제13조 사후검사 실시공무원의 신분확인 25
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 37		제14조 이의신청 26
제14조 청 문 38		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6
제15조 권한의 위임 38		제16조 사후관리 26
제16조 (삭제) 38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7조 (삭제) 38		술인력 기준 28
제18조 (과태료) 39		제18조 사후관리자에게 대한 자금지원 등... 29
부칙 40		제18조의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 30
		제18조의3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 30
		제18조의4 안전장치 부착확인 재료
		등의 요구 31
		제18조의5 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31
		제18조의6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
		의 처리 등 32
		제18조의7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등 · 33
		제18조의8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34
		제18조의9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 조사 35
		제18조의10 준용규정 36
		제19조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36
		제20조 (삭제) 37
		부칙 40

농업기계화촉진법령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p> <p>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p>	<p>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도정(搗精)·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p> <p>라.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p> <p>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p> <p>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 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조 (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 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 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 	<p>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 (시행계획)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p>	<p>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p>	<p>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p> <p>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p>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조 (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공이용사</p>	<p>련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업자에게 그 농업기계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9조 (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및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p> <p>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p>		<p>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圃場)에서 작업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해당 포장에서 시험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p> <p>1. 규격 및 성능 설명서 1부 2. 사용설명서 1부</p> <p>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신청·기준·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제10조 (검정의 무효·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p>		<p>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p>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p> <p>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p> <p>3.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p> <p>4.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p> <p>5. 변경검정: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서 적합관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p> <p>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 및 방법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 방법은 신청인과 과학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과학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검정: 45일 2. 안전검정: 30일 3. 국제규범검정: 60일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 기술지도검정: 30일</p> <p>5. 변경검정: 20일</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1.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정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검정 항목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의 기간</p> <p>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p> <p>3. 온도·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p> <p>③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업기계에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p> <p>⑤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 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과학</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알릴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p> <p>제8조(검정의 생략) 과학원장은 신청 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p> <p>제 9 조 삭제<1999.1.5> 제10조 삭제<1999.8.9></p> <p>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p> <p>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후검정 등 실시공무원의 신분확인)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거나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16조(사후관리)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p> <p>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p> <p>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p> <p>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변속·제동·차동·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p> <p>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2조 (안전관리) ①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수산물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p>	<p>제7조 (안전장치의 구조) 삭제</p>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2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2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p>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3과 같다.</p> <p>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p>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의4(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① 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정당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p> <p>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p>		<p>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4와 같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확인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p> <p>⑨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안전장치 부착 확인 방법·절차,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① 과학원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제18조의5제3항에서 정한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2. 확인을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확인을 위한 조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에는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의7(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유서 2. 변경 전·후의 설계도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장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① 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2.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항목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조 기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과학원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p>	<p>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p>	<p>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p> <p>② 과학원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20조 <삭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p>제14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p>	<p>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9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p> <p>제1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관정을 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p>검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 취소 3. 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4.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p> <p>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기계의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p>	<p>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p> <p>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p>		

2.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 각 목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1호	1,000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2호	1,000
다.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3호	1,000
라.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1호	100
마.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2호	
1) 시정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		25
2) 시정기간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50
3) 시정기간경과 후 3개월 초과		100

3.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표

[별표1] 사후검사결과의 세부처분기준(시행규칙 제15조관련)

[별표2]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별표3]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2 관련)

[별표4]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5제2항 관련)

[별표 1]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 안전성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로트(lot) 보완지시
2. 주요 부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로트 보완지시
3. 주요 부품의 임의 개조·변경으로 인하여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로트 보완지시
4. 성능검정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로트 보완지시
5.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이나 조작의 난이도 등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출하금지 및 해당 로트 보완지시
6. 도장, 가공상태 등 외형적 요인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로트 보완지시

[별표 2]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대형 사후관리업소	중형 사후관리업소	소형 사후관리업소
1. 시설기준 ○ 옥내작업장 ○ 수리장비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500㎡ 이상 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	150㎡ 이상 호이스트·체인블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	50㎡ 이상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 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분야 기능사는 3년 이상, 농업기계분야 기능사는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는 5년 이상, 농업기계분야는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두 명 이상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두 명 이상

- 비고) 1. 인력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관리업자 자신의 자격도 포함하여 판단함.
2. 실내 작업장은 수리·정비시설, 수리용 부품 보관시설을 포함함.
3.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은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별표 3]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2 관련)

명 칭	적 용 대 상
농업용 트랙터	견인형, 장착형 및 구동형 작업기가 연결되어 농림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차륜형(2차축 이상) 또는 무한궤도형(반궤도형을 포함한다)의 승용자주식 원동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업용 동력 운반차	농산물의 가까운 거리 운반 작업을 위하여 설계된 차륜형(2축 이상) 또는 무한궤도형(반궤도형을 포함한다)의 승용자주식 운반기계로 적재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재엔진의 최대출력이 18 kW 이하인 것 - 최고주행속도가 7 km/h 이상 15 km/h 이하인 것 - 차량중량이 450 kg 이상인 것
콤바인	농경지에서 벼·보리·콩·유채 등과 같은 농작물을 베는 것과 동시에 탈곡 및 선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륜형 또는 무한궤도형(반궤도형 포함한다)의 승용자주식 수확기계(자탈형 또는 보통형)
스피드스프레이어	과수원에서 방제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송풍장치 등이 탑재된 차륜형(2축 이상) 또는 무한궤도형(반궤도형을 포함한다)의 승용자주식 방제기계로, 최고주행속도는 7 km/h 이상 20 km/h 이하인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업용 트랙터(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주로 짐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또는 동력경운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도록 설계된 피견인식 운반기계(곡물운반용 포함한다)
농업용 트랙터 견인식 비료살포기	퇴비 또는 액상비료를 논, 밭 등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에 연결되어 견인되도록 설계된 피견인식 비료 살포기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	

[별표 4]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5제2항 관련)

1. 가동부 및 고온부 방호장치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장치
3. 전기시동장치
4. 동력차단장치
5. 제동장치
6. 운전자보호장치
7. 운전·조작장치
8. 작업기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9. 계기장치
10. 경보장치
11. 등화장치
12. 전도각, 전륜 분담하중, 축하중, 연료탱크, 기체 폭, 안전표시, 형식 표지판
1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 1 호서식(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별지 제 2 호서식(농업기계 검정 신청서)

별지 제 3 호서식(농업기계 검정 성적서)

별지 제 4 호서식(검사성적서 사본 발급신청서)

별지 제 5 호서식(증 표)

별지 제 6 호서식(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서)

별지 제 7 호서식(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

별지 제 8 호서식(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신청서)

별지 제 9 호서식(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별지 제 10 호서식(시정명령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검정용 도의 제품	기종명		
	형식명		
	형식 및 규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상 호:

2. 검정 용도의 제품

가. 기종명:

나. 형식명:

다. 형식 및 규격:

3. 검정번호:

4. 검정성적: 붙임

5. 검정 결과 판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검정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성적입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본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검정번호			
발급 신청 부수		한글: 부, 영문: 부	
사용목적			
<p>「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8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성적서(안전장치 부착 확인서)의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p>※ 작성방법 검정번호는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 신청 시 부여된 번호입니다.</p>			수수료 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증 표

소 속:

직 급:

성 명:

검정(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8조의10)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 조사)을(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인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검정용 도의 제품	기종명		
	형식명		
	형식 및 규격		
	제조번호		
검정번호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검정용도의 제품 제출 장소 및 날짜			
<p>「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p>			
※ 구비서류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수수료
			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

1. 신청인

가. 성명: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라. 상호:

2. 검정용도의 제품

가. 기종명:

나. 형식명:

다. 형식 및 규격:

3. 검정번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신청한 위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제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대상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상 농업기 계	기종명			
	형식명			
	형식 및 규격			
검정번호				
시정명령사항				
시정기간		년	월	일까지
<p>「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변경)한 안전장치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니 기간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국립농업과학원장 <input type="checkbox"/></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											
성명	주소	농업 기계명	형식 명	검정 번호	형식 및 규격	시정명령		시정 확인 결과			비고
						날짜	내용	날짜	내용	확인자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

제정 제1995-48호(1995. 7. 6)

개정 제1998-53호(1998. 8.18)

개정 제2000-79호(2000.12.30)

개정 제2009-324호(2009.9.15)

제1 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신기술농업기계의 대상) 신기술농업기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업기계로서 생산 초기단계에 있거나 상품화된지 1년이내의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 농업기계로 한다. 다만, 이미 상품화되어 타사제품과 경합하여 시판하고 있는 농업기계는 제외한다.

1. 농작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현저히 촉진시키거나 농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업기계
2. 성능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킨 농업기계
3.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시킨 농업기계
4. 기타 안전성, 조작취급성을 현저히 향상시킨 농업기계

제3 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신청) ①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기술농업기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효과분석 및 공급계획서(별지서식) 1부
2. 다른법령에 의한 신기술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제품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신청서류는 신기술농업기계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신기술농업기계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위하여 성능 등에 관한 시험을 전문시험기관(연구기관 및 대학)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평가를 위하여 관련기관·연구기관·학계·제조업체의 전문가 및 농업인 10인 이내에게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여부 등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기술농업기계의 명칭, 특성 및 지정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 한다.

제 6 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제 7 조(자금지원) ①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 및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지원자금은 신기술농업기계가격의 10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사후관리) ① 농림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거나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부고시 제2000-79호('00. 12. 30)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효과분석 및 공급계획서(제3조관련)

1. 신기술농업기계

가. 명 칭 :

나. 형식 및 규격 :

2.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구조, 성능을 중심으로 기재)

3. 신기술농업기계의 특성

구 분	신기술농업기계	국내유사농업기계	선진국 유사농업기계
구 조			
성 능			
안 전 성			
가 격			
국산화율			

4. 효과분석(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 촉진, 농업생산비 절감, 성능 및 품질 향상, 생산원가 절감, 안전성 및 조작취급성 향상 등에 관한 효과를 기재 하되 가능한한 수치화하여 기재)

5. 공급계획

가. 생산 및 공급계획

나. 연차별 공급계획(3개년도 이상 분기별로 기재)

(단위 : 대, 천원)

구분 \ 연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생 산												
- 대 수												
- 단 가												
○공 급												
-국내공급												
-수 출												

6. 신기술농업기계의 사진

[별지 제2호서식]

제0000 - 0 호

신기술농업기계지정서

제조업체 :

주 소 :

지정기간 :

신기술농업기계의 명칭 :

위의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합니다.

0000 년 0월 0일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장 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정 제1995-49호(1995. 7. 6)

개정 제1999-21호(1999. 4.22)

개정 제2005-3호(2005. 1. 15)

개정 제2009-321호(2009.9.1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 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공급, 수리·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 ③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및 (사)한국농기계유통협회장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부고시 제2005-3호(2005. 1. 15)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

구 분	1 차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미달한 경우 ○ 부품공급 및 사후 봉사 소홀 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부당공급 등 유통 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주) 1. 위반사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조치한다.
 2. 위반회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고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통보하고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한다.
 4.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처분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제출인	명칭(상호)		등 급	대형(), 중형(), 소형()
	성 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시설 및 기술인력	작업장	소재지	(전화)	
		규 모	m ²	
	수리장비	크레인(), 호이스트(), 체인블럭(), 리프트()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확 보 (), 미확보()		
	기술인력	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수리보조자 명)		
<p>「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인 (인)</p> <p>○○○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현황 1부. 2. 작업장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변경) 현황

1. 시설 확보

가. 작업장

계	옥 내	옥 외	비 고
m ²	m ²	m ²	

나. 수리장비

장비명	규 격	수 량	비 고
		대	

다.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장비명	규 격	수 량	연계확인	비 고
		대		

※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확인을 할 수 있는 부품관리 전산체계도 등 첨부

2. 기술인력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 ① 구분란은 자격증소지자, 경력소지자 및 수리보조자로 표기
 ② 비고란은 자격증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명, 경력자는 수리경력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1. 사후관리업소의 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4.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사후관리업소등급	작업장	수리장비	전산화	기술인력				확인		비고	
							계	자격증소지자	경력소지자	수리보조자	일자	점검자		
				m ²	대		명							

- ※ ① 사후관리업소별로 카드화하고, 확인일자별로 작업장, 수리장비, 전산화,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관리
- ② 수리장비 및 전산화는 해당등급 사후관리업소를 말하며, 전산화는 ○, ×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

제출인	성 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작업장	명칭(상호)			
	등 급	대형(), 중형(), 소형()		
	소 재 지	(전화)		
폐업일				
사 유				
<p>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을 폐업하고자 폐업제출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인 (인)</p> <p>○○○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p>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제정 제1996-56호(1996. 8. 28)

개정 제2001-56호(2001. 9. 5)

개정 제2009-322호(2009. 9.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

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험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사망

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당해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당해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

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당해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 9.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부고시 제2001-56호('01.9.5)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보고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 내용

가. 안전장치명칭

나. 세부결함 내용

다. 예상되는 피해 내용

4. 결함사실을 알게된 시점 및 경로

5. 농업인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인적사

항 및 피해내용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1.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2.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사유

3. 결함의 시정방법

가. 시정방법(수리, 교환, 환불 등)

나. 시정책임자(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명 등)

다. 시정기간, 농업인이 방문할 장소, 영업시간 등

4. 농업인 주의사항

5. 이번 ○○의 결함시정은 농업인의 부담없이 무료로 실시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1. 시정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안전장치명

2. 시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실적

가. 시정방법 (수리, 교환, 환불등)

나. 시정실적

4.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농업기계에 대한 조치 계획

5. 재발방지 대책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1.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 가. 명칭
 - 나. 주소

2.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 가. 명칭
 -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 가. 명칭
 - 나. 주소

2. 시정대상 농업기계
 - 가. 명칭
 - 나. 형식 및 규격
 - 다. 공급기간

3. 시정권고의 수락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소비자피해보상규정(농기계)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2004. 11. 1

재 정 경 제 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정 1985.12.31
개정 1989. 7.14
1993. 3.25
1994. 7.16
1996. 4. 1
1999. 3.13
1999. 7.19
2000.12. 4
2001.12. 4
2002.12.31
2003. 8. 1
2004.11. 1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 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은 각각 별표 I, 별표 II 및 별표 III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I]

대 상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 농업용기계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 어업용기계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 농업용자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포트, 하우스용 PVC 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 축 산 자 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별표 II]

품 목 별 보 상 기 준

품 중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기계 ○ 어업용 기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공장 - 조립불량 및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 주요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포장 및 수송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부품보유기간이내) 발생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보증기간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농번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유상수리비 부담 후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피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현지 출장수리 · 소비자의 현품운송 거부 · 현품운송공란 또는 운송비 과다 · 농번기
○ 농업용 자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 축산 자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p>○ 농·어업용기기</p> <p>1) 농업용기기</p> <p>2) 어업용기기</p>	<p>○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p> <p>○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 500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p> <p>○ 1년</p>	<p>○ 7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p>